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80

발의연월일: 2024. 10. 1.

발 의 자:문대림・주철현・권향엽

김 윤 • 이광희 • 조인철

이워택 · 김영호 · 신정훈

이병진 • 박희승 • 박해철

오세희 • 박홍배 • 서삼석

의원(15인)

제안이유

온실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각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전 세계의 해운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을 목표로 국제 해운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음. 이에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친환경 선박의 개발등 해운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액체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탄소중립의 취지에 어긋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해운 부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해상운송의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녹색해운항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현재 부산항과 울산항에서 태평양을 횡단하여 미국의 시애틀과 타코마항으로 연결되는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제외한 국내 항만 간 또는 기업 간 운항되는 녹색해운 항로는 전무한 상황으로, 기존 법률에 근거한 녹색해운항로의 구축 및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를 넘어선 더 다양한 층위에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하여 항만과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해운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미래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 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녹색해운항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해 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두 개 이상의 환경친화적 항만을 연결 하는 항로로서 그린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지정

-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공사 및 부두운영회사 등이 국내 외 기관·단체 등과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확대 촉진과 관련한 양 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녹색해운항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녹색해운항로 지원협의체를 두도록 함(안 제8조).
- 바. 정부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및 현장 전문인력 재교육 등의 시책을 수 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사. 정부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아. 정부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의 구축 및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 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관련한 사업 중 탄소중립 달성,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녹색해운항로의 구축 및 운영·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해운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그린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 중 무탄소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 2. "환경친화적 항만"이란 재생에너지 사용 설비로 가동되는 항만으로서 항만에 정박하는 그린 선박을 위한 친환경연료 공급시설 등의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항만을 말한다.
- 3. "녹색해운항로"란 무탄소 연료와 친환경기술을 활용하여 두 개이상의 환경친화적 항만 사이를 그린 선박이 운항하고 해상운송의 전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항로로서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로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한 그린 선박 및 환경친화적 항만 관련 기술개발, 친환

- 경 연료 확보 등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 제4조(타 법률과의 적용 관계) 이 법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녹 색해운항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
 - 2. 녹색해운항로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3.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온실가스의 감축과 대기질 개선 효과에 관한 사항
 - 4.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5.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6. 녹색해운항로의 구축을 위한 세제·재정·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6조(녹색해운항로의 지정·고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두 개 이상의 환경친화적 항만을 연결하는 항로로서 그린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

- 를 녹색해운항로로 지정 · 고시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해운항로를 지정하기 전에 녹색해운항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색해운항로 및 예비 녹색해운항로를 지정하는 경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7조(녹색해운항로 양해각서 체결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외 기관·단체 등과 녹색해운 항로 구축 및 확대 촉진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 1.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리청
 -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3.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부두운영회사
 - 4. 해운업·조선업 관련 기업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선박 연료의 생산자ㆍ공급자
- 제8조(녹색해운항로 지원협의체) ① 녹색해운항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녹색해운항로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1. 녹색해운항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 2. 녹색해운항로의 발전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 3. 녹색해운항로 구축 관련 이해관계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녹색해운항로의 구축·운영 및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지원협의체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 2. 항만(「항만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 3. 항만・조선・해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4. 해운·해양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5. 항만 인근 지역 주민대표
-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그 밖에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녹색해운항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1.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력의 양성
- 3. 녹색해운항로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미래 유망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 4.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현장 전문인력의 재교육
- 5. 그 밖에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 제10조(녹색해운항로 구축 관련 연구개발 등) ① 정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계·연구기관·산업계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 연구를 촉진할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녹색해운항로 관련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등 국내외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여야 한다.
- 제11조(국제협력) 정부는 녹색해운항로의 구축 및 지속적인 확대를 위

하여 관련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관련한 사업 중 탄소중립 달성,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 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금융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 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해운항로의 구축 및 운영·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